〈교연비 왜 문제인가? 그 대안은?〉
경북대학교 정책토론회, 2021. 7. 2.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대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의 입장

전국국공립대학
교수노동조합
Union of Kore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s

차례

1. 관련 법령
2. ‘교연비’ 지급의 역사적 배경
3. 시행규칙의 문제점
4.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및 교육부 감사의 문제점
5. 열악한 교수의 처우
6. 요구사항
7.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개정(案)

▷관련 법령 -국립대학 회계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 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교연비는 "교육·연구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
  - 비용: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드는 돈
- **비용 지급에 대한 기본적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총장이 세부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불인정**
-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

▷관련 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 보수 우대**
- **교원에 대한 특별 수당 지급**

▷관련 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교원 보수의 우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

▷‘교연비’ 지급의 역사적 배경

- 국립대학 교원의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기성회회계 정액연구비’에서 전환된 것임.
- 2015년 기성회계의 폐지로 인해 ‘정액연구비’의 지급 근거가 사라지자, 대안으로 교연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 회계법에 포함시킴.

- **국립대학 교수의 처우는**
  - ✓ **사립대학 교수에 비해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 ✓ **국립대학 교수의 생애 연봉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생애 연봉 대비 1억 2천만원 적은 91% 수준임(공무원 봉급표 참조).**
  - ✓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 평균 2,160만원 적은 연봉**
- ✓ **국립대학 교수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임.**

▷시행규칙의 문제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연비의 지급의 논리적 정합성 및 역사성 훼손
- 국립대학 회계법과의 충돌
- 대학의 자율성 침해
- 교연비는 폐지되도록 설계
- 국립대학을 황폐화
- 국립대학 경쟁력 약화

▷시행규칙의 문제점-국립대학 회계법과의 충돌-

국립대학 회계법

제28조 ① 국립대학의 장은 소속 교직원에게 대학회계의 재원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국립대학 회계법은 교연비를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행규칙은 실적에 따라 차등하는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어,
  - ✓ 교연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됨.
  - ✓ 따라서 비용에 대한 소득세로 과세하는 제도
- 시행규칙 제22조는 비용을 지급하라는 국립대학 회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됨.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개정하여야 함.

▷시행규칙의 문제점 -논리적 정합성 및 역사성 훼손-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 국립대학 교원의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인건비성 연구비에서 유래
- 교수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고유 업무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임.
- 통상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교육, 연구, 학생지도'를 해야 함.
  - ✓ 교수는 업무 시간에 사업 수행을 위해 교수의 고유 업무 이외의 (유사)'교육, 연구, 학생지도'업무를 수행하거나, 통상업무에 대해 임금과 교연비라는 사업비를 부정으로 이중 지급받도록 하고 있어,
- 교수에게 위법 행위를 종용하여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규칙
- 시행규칙의 개정 없이는 교연비 부정 수급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
-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개정하여야 함.

▷시행규칙의 문제점-대학의 자율성 침해-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1.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⑥ …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시행규칙은 교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음.**
- **아울러 교육부는 컨설팅이라는 미명아래 교연비를 사업비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시행규칙의 문제점-교연비는 폐지되도록 설계-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① 1.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로 정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교연비는 폐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시행규칙의 문제점 -황폐화되는 국립대학-

국립대학 교수는 파렴치한 범법자

- 교연비 부정 수급 논란으로 인해
  - ✓ 통상업무로 임금과 비용을 이중 지급받는 범법자
  - ✓ 국립대학 교수의 자존감이 깡그리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함.
  - ✓ 학생지도비 13만원 지급 논란의 여파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함.
  - ✓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 관계가 붕괴됨.

국립대학 경쟁력을 갉아 먹는 제도

- 국립대학 교직원에게 통상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립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 통상업무 이외의 사업 수행 ⇒ 사업 실적물 제출 ⇒ 평가 ⇒ 차등 지급
  -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및 교육부 감사의 문제점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와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국립대학 교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각종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감사를 받는 국립대학은 대학 업무가 마비될 지경으로 많은 교직원들이 소명 자료 작성에 매몰되어 있음.

- 학생과 교수 사이 나누었던 **비공개 상담내용까지 교연비 지급 관련 감사과정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 ✓ **교권이 무너지고,**
  - ✓ **향후 진솔한 학생 지도가 어려워짐.**

▷ 열악한 교수의 처우 -수당지급-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수당분류	수당세목
상여수당(2종)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가계보전수당(3종)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특수지근무수당	도서, 벽지, 접적지근무자수당
특수근무수당(2종)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초과근무수당(2종)	시간외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실비변상(3종)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연가보상비는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만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초·중등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과 교직수당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립대학 교원만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는 명백한 교육공무원법의 위반사항임.

- 「교육공무원법」 제35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연구 수당과 교직 수당을 기본급으로 편입하여 지급

직급	연구수당	교직수당
조교수	45만원	45만원
부교수	50만원	50만원
교수	60만원	60만원

▷열악한 교수의 처우 -봉급-

2020년 유치원 초등/중등/고등 교원 봉급표

호봉	월급여	나이
1	1,656,000	
2	1,706,200	
3	1,757,000	
4	1,807,700	
5	1,858,900	
6	1,909,900	
7	1,960,300	
8	2,010,600	
9	2,061,700	
10	2,117,500	32
11	2,172,100	33
12	2,228,000	34
13	2,329,400	35
14	2,431,300	36
15	2,533,100	37
16	2,635,100	38
17	2,735,900	39
18	2,841,400	40
19	2,946,400	41
20	3,051,300	42
21	3,156,200	43
22	3,272,700	44
23	3,388,300	45
24	3,504,000	46
25	3,619,700	47
26	3,735,900	48
27	3,857,000	49
28	3,977,900	50
29	4,104,300	51
30	4,231,200	52
31	4,357,600	53
32	4,483,800	54
33	4,612,100	55
34	4,740,000	56
35	4,868,000	57
36	4,995,600	58
37	5,106,700	59
38	5,217,800	60
39	5,329,200	61
40	5,439,800	62
생애연봉	1,342,821,600	

2020년 국립대 교원 봉급표

호봉	월급여	나이
1	2,088,600	
2	2,154,300	
3	2,220,500	
4	2,286,200	
5	2,352,400	
6	2,424,900	
7	2,497,200	
8	2,569,900	
9	2,678,900	
10	2,787,900	
11	2,897,100	43
12	3,005,700	44
13	3,114,000	45
14	3,222,500	46
15	3,349,800	47
16	3,476,900	48
17	3,603,400	49
18	3,729,900	50
19	3,857,200	51
20	3,983,100	52
21	4,109,400	53
22	4,235,800	54
23	4,400,400	55
24	4,564,700	56
25	4,729,000	57
26	4,893,000	58
27	5,057,100	59
28	5,221,100	60
29	5,345,900	61
30	5,470,900	62
31	5,595,700	63
32	5,720,400	64
33	5,845,300	65
생애연봉	1,226,594,400	

열악한 국립대학 교수의 처우

- 교연비와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이 받는 각종 수당을 제외하면,
- 대학교수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은 43세고 고등학교 교사의 신규 임용 평균 연령을 32세 정도임.

- 유치원 초등/중등/고등학교 교원의 평균 생애 연봉 대비 교수의 생애 연봉은 1억 2천만원 적은 91% 수준임.

열악한 국립대학 교수의 처우

- 같은 직급 일반직 공무원보다 연 평균 2,160만원 적은 연봉을 받고 있음.

▷ 열악한 교수의 처우 -대학교수 연봉 비교(정교수)-

정교수		
대학	평균연봉	차이
연세대	180,160,000	67,773,000
고려대	130,383,000	17,996,000
영남대	123,203,000	10,816,000
서울대	118,424,000	6,037,000
계명대	117,769,000	5,382,000
경북대	112,387,000 (93,887,000)*	0
부산대	107,423,000	-4,964,000
전남대	104,169,000	-8,218,000

- 국립대학교의 경우 교육·연구 학생지도비를 포함한 금액

*: 교연비 1,850만원을 제외한 금액

▷요구사항

교육부는 국교조와 합의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교연비 지급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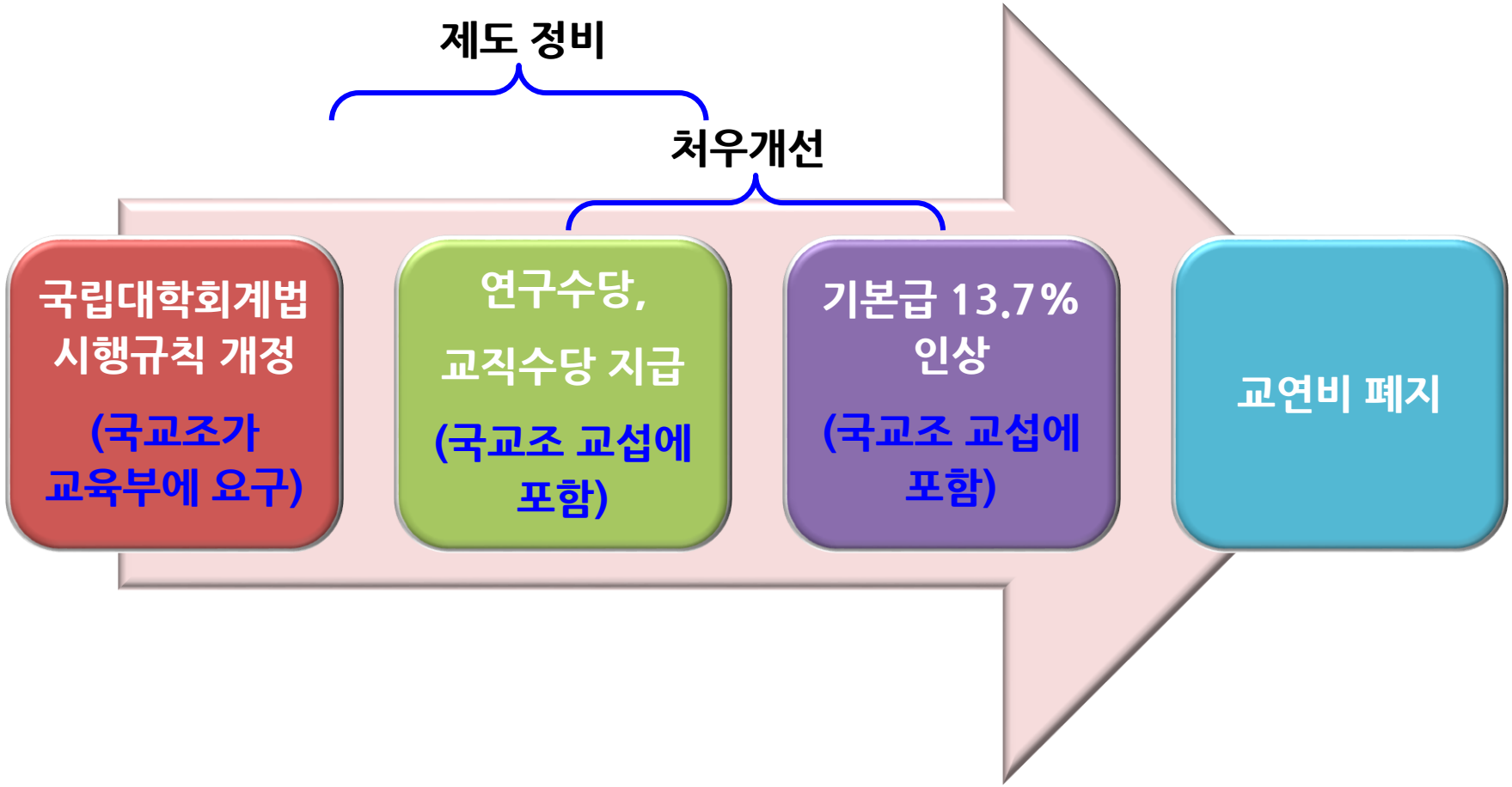

▷요구사항

교육·연구 학생지도 비용을 폐지하고, 그 잉여금(약 4,500억원 추정)으로 위기의 국립대학을 구하기 위한,

- **국립대학 경쟁력 강화와**
- **국립대학 무상교육의 재원으로 활용하라!**

▷시행규칙 개정(안)

기존	개정	비고
제22조(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① 국립대학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위한 비용(이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이라 한다)을 교직원에게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 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회계연도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예산의 결산액 범위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2.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2.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담당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각 영역별 지급 기준을 정할 ~~것~~ 수 있다.	
3.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3. 교육 · 연구 · 학생지도 등을 위한 계획서와 그 계획서에 따른 실적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것~~	삭제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4.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	삭제

▷시행규칙 개정(안)

기존	개정	비고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실적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립대학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해당 회계연도의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계획(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영역별 지급기준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 · 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이전 회계연도의 지급 계획,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과 비교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 · 결산을 공개할 때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세입 대비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편성된 예산 및 집행 비율을 각각 명시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받는 개인별로 지급 명세를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제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실적의 인정 기간 및 인정 방법, 영역별 지급액, 지급시기 등 교육 · 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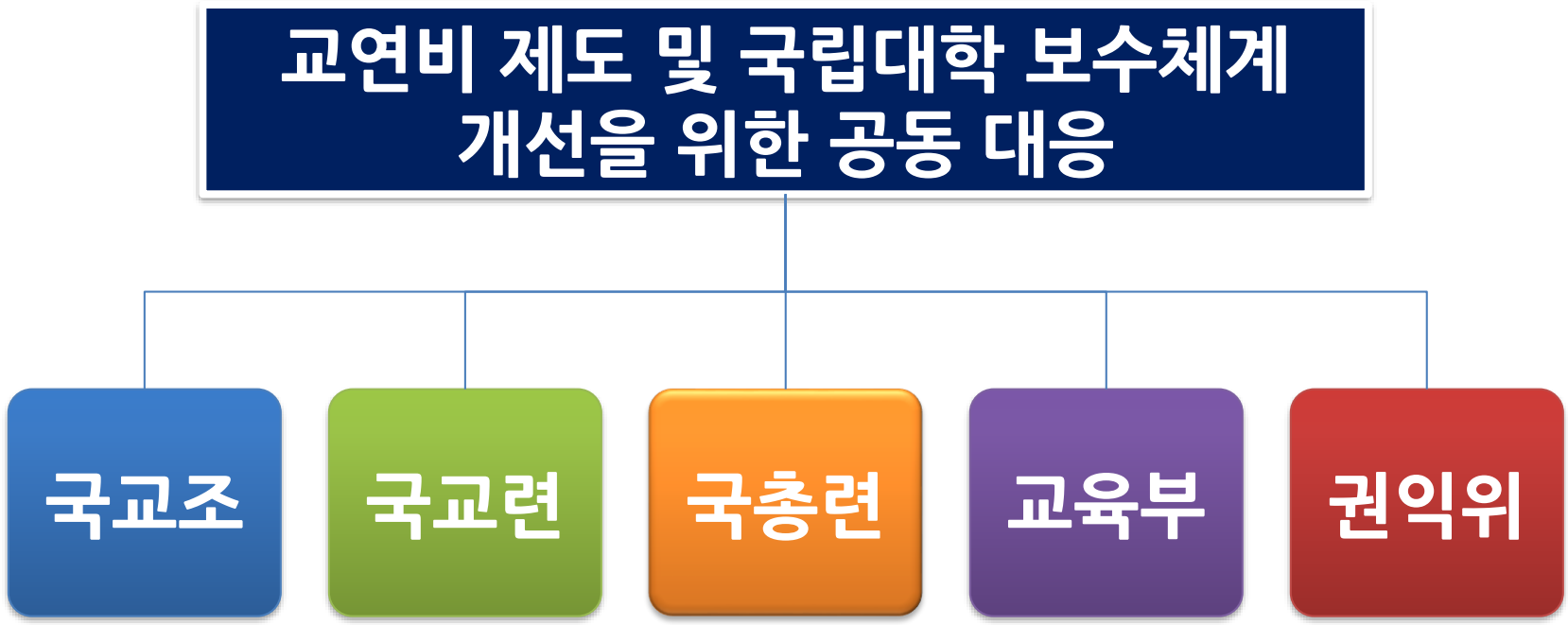
▷향후 계획